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9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18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,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개정(△ 87명)
 - 본 청 : 241명 → 211명 (△ 30)
 - 의회사무기구 : 13명 → 13명 (△ 0)
 - 직 속 기 관 : 140명 → 135명 (△ 5)
 - 사 업 소 : 14명 → 13명 (△ 1)
 - 읍 면 : 285명 → 234명 (△ 51)

3. 본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241”을 “211”로, 동조제3호중 “140”을 “135”로, 동조제4호중 “14”를 “13”으로, 동조제5호중 “285”를 “234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략) 1. 본 청 : <u>241명</u> 2. 의회사무기구 : 13명 3. 직 속 기 관 : <u>140명</u> 4. 사 업 소 : <u>14명</u> 5. 읍 면 : <u>285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(생략) 1. 본 청 : <u>211명</u> 2. (현행2호와 같음) 3. 직 속 기 관 : <u>135명</u> 4. 사 업 소 : <u>13명</u> 5. 읍 면 : <u>234명</u>